

# 기업지배구조 헌장

2023. 05. 02. 제정

2024. 06. 24. 개정

2026. 04. 03. 개정

## 전 문

OCI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핵심소재 기업으로서 최고의 기술과 제품으로 고객에게 신뢰받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OCI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여 주주, 고객, 구성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선언한다.

## 제 1 장 주 주

### 제1조 (주주의 권리)

- ① 주주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주주권에 기반하여 주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② 주주는 관련 법규에 따라 주주총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대한 질문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 ④ 회사는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최대한 많은 주주가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에게 제공한다.
- ⑤ 회사는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공개하고, 이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의 권리를 존중한다.

### 제2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 ① 주주의 의결권은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의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으로 적용한다.
- ②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한다.
- ③ 회사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위배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한다.

- ④ 회사는 전체 주주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에 적극 노력한다.
- ⑤ 회사는 거래 관계에 있어 주주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지 아니하며,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 제3조 (주주의 책임)

-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한다.
- ② 지배주주 등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는 모든 주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다른 주주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제 2 장 이 사 회

### 제4조 (이사회의 기능)

- ① 이사회는 관련 법규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제1항의 의결을 함에 있어 각 이사가 독립적으로 충실하게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③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며,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관리·지원·감독한다.
- ④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승계규정을 마련하여 경영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다.

### 제5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 ① 이사 수는 효율적인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로 선임하며, 이사회 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지배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위하여 독립이사를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는 회사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④ 이사회 구성원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국적, 장애여부 등의 요소에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 ⑤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 ⑥ 회사는 이사 선임 시, 주주가 이사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할 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제6조 (독립이사)

- ① 회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회사와 계약·거래 등 중대한 관계가 없고 회사경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적합하며,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후보로 추천한다.
- ② 독립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심의안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한 후 참석한다.
- ③ 회사는 독립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직원 또는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제7조 (이사회 운영)

-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 ② 이사회는 필요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들이 회의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제8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회사는 이사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이사회 내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각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9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어떤 심의나 의사결정이 자신의 개인적 이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사로서의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 ④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 제10조 (이사의 책임)

- ① 이사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 ② 회사는 정관으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③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게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수행을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 ④ 회사는 이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대비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통해 유능한 사람을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D&O)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1조 (평가 및 보상)

- ① 이사의 경영활동 내용은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이사의 보수 및 재신임의 결정 등에 적정하게 반영한다.
- ② 이사의 보수는 그 직무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유지하며, 회사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회사와 주주의 장기적 이익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 ③ 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독립이사의 이사회 활동 내역과 보수 등을 공시한다.

## 제 3 장 감사기구

### 제12조 (감사위원회)

-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재무 전문가이어야 하며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진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감사, 재무보고 과정의 적절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변경의 타당성 검토,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과 주주총회에서 사후보고 등을 수행한다.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내부 감사부서의 지원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3조 (외부감사인)

-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한다.
- ②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외부 감사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한다.
- ③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성실히 답변하고 설명한다.

## 제 4 장 이해관계자

### 제14조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 ① 회사는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경제적·사회적인 가치를 나누고, 동반자로서 성장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한다.
- ③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어 공정한 시장질서를 준수하고, 상호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협력한다.
- ④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자 보호절차를 준수한다.
- ⑤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 각각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5조 (윤리경영)

- ① 회사는 '임직원 윤리 행동 준칙'을 제정하고 이를 구성원 모두에게 게시하고 교육한다.

- ② 회사는 '신뢰와 존중'을 경영의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모든 기업활동에서 법규와 사회규범을 준수하며, 이해관계자에 대한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 5 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 제16조 (공시)

- ① 회사는 관련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뿐만 아니라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시한다.
- ② 회사는 정기공시 이외의 중요한 경영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그 내용을 적시에 정확하게 공시한다.
- ③ 회사는 공시 내용을 이해관계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 ④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고,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내부정보 전달체계를 갖춘다.
- ⑤ 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의 공개범위를 정하고, 특정 정보이용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한다.

### 제17조 (기업 경영권 변동사항)

- ① 회사의 인수,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적법하고 투명하게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② 회사의 경영권 방어 행위는 특정한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와 소액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아니된다.
- ③ 회사는 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주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한 주주가 관련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부 칙

### 제1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기업지배구조헌장 규정과 정관 및 이사회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정관과 이사회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제2조 (시행일)

이 기업지배구조헌장은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 독립이사 명칭 관련 개정규정(제5조, 제6조의 제2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